

# 國家技術資格法과 建築設計

崔 鄉



## ◆ 建築設計는 어느 技術分野에 屬하나

建築設計가 対物的인 一般科學技術에 屬하는 것 이나? 아니면 対人的인 藝術創作分野인 特殊分野에 屬하는 것 이나? 하는 問題는 이미 國際的으로도 그리고 國內에서도 이미 定義가 내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으나 오는 7月1日 부터 施行을 보게된 国家技術資格法의 發効와 때를 같이 하여 이 問題가 새삼스럽게 再燃되면서 平地風波를 일으키게 될 줄은 아무도豫測마저 못했던 事実이다.

그理由는 先進國家라고 불리우고 있는 美、英、佛、獨、日등 여러나라에서도 이 問題를 둘러싸고 오랜 歲月에 걸쳐 많은 論難을 거듭한 끝에 이 問題는 対物의이기 以前에 対人的인 特殊분야에 屬해야 한다는 데로 定義를 내리고 制度上 運營上面에서 그렇게 处理하고 있으며, 國내에서도 이에準해서 制度面에서나 運營面에서 醫師나 辯護士와 마찬가지의 特殊分野로 取扱되어 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事実에 対한 한 實例로서, 지금까지 國내에서는 制度面에서 特殊技術 또는 対人的인 藝術創作 技術로 決定을 내린 事例가 바로, 建築設計가 「國展」의 一部門으로 包含되고 있다는 事実이나 建築家協會가 芸總率下의 한團體로 存續하면서 国家로부터 育成資金의 支援까지 받아왔다는 事実이다.

万一 建築設計가 藝術創作 技術에 屬할수 없는 性質의 것이라면 政府가 어떻게 建築家協會로 하여금 芸總率下의 한團體로 認可하고 育成해 왔으며 「國展」에 建築設計를 包含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重大한 問題가 起起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昨今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起起되고 있는 이 問題에 対해서는 再論이나 論難의 焦点으

로 登場할 價值조차 없는 것이며, 또한 論難이 ullen余地조차 없는 問題라고 斷定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다만 여기서 이 問題에 対한 定評을 내리기 까지의 論難의 焦点이 되었던 問題点과 그結果를 參考로 하기 위한다면 다음과 같이 論할수 있을 것이다.

첫째: 建築設計가 어디까지나 対人的이며 藝術創作分野에 屬한다고 主張한 側의 論理로서는 「建築設計라는 것은 高次元의인 人間의 心理的 慾求를 充足시켜 주어야하며 가장 藝術의 美를 創作하여 승화된 藝術의 경지까지 이끌어 올려야 하는 特殊分野로서 이는 人類의 歷史를 通해서도 볼 수 있으며 認定받아 온 事実이라고前提하면서 그의 實例로서 藝術이나 美術, 調刻같은 것도 하나의 技術分野에 屬하고 있는 것만은 事実이며. 또한 이 技術의 技法은 多樣하고도 이 幅이 넓고 깊이가 깊어 그 技術의 尺度는 도저히 測定할 수 없는 無窮과 未知의 境에 있으며 그 分野에 執務하는 者의 考索 創意 創作力과 技法에 따라서 똑같은 狀況下에서 이루어진 作品이라고 해도 그作品의 優劣性은 달라지기 마련이며 또 同一한 作品이라고 해도 보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價值가 달라지기 때문에 基準이나 定評을 내리기는 固難한 問題라고 強辯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同一 狀況下에서 同一하게 作品된 것이라고 해도 어떤 것은 極致에 達하게 創作되었는가 하면 또 어떤 作品은 一考의 價值도 없는 粗雜品의 評을 免치 못하는 結果를 招來케 한다는 点을 根據로해서 檢討해 볼 때 建築設計는 어디까지나 藝術創作分野의 技術에 屬하는 것이며 또한 造形藝術의 한分野에 屬하고 있다는 事実을 立証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藝術創作分野에 屬하고 있는 建築設計에 依한 建築物은 外觀이나 内裝施設設備를 計劃設計함에 있어서도 視覺的인 面에서도 造形에 關한 高度의 專門的인 知識이 있어야 하는 業務로서 居住人間의 多樣한 情緒 嗜好에 副應할 수 있는 보다 安樂한 生活環境의 造成과 利用度높은 經濟性이 加味되어야하는 가장 重要한 要素가 包含 되어야 하고 居住人間의 慾求를 充足시켜 주어야 하고 그 作品이 이에 副應되어야 한다는 点이다.

그렇기 때문에 建築設計는 가장 情緒적, 美的 그리고 文化創造的인 造形藝術의 價值와 意匠美術面이 調和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点이 強調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條件의 강요는 거주하는 인간의 日常生活에서 받은 有形 無形의 영향력이 그 人間의 수명과도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重大 事項을 度外視 할 수 없는 問題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복잡하고도 주요한 여전과 実情을勘案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教育制度에서도 建築分野에 있어서는 施工構造面을 為主로 하는 科學技術分野에 속하는 建築工學科目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目的하는 바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간주하고 造形과 意匠을 為主로 하는 造形美術分野인 建築意匠學科를 두어 區分하고 있으며 이 두 科目을 모두 專攻하지 않고서는 建築設計에 限해서만은 萬全을 期하기 어려운 다른 科學技術分野와는 本旨를 달리하고 있는 特殊分野라는 点을 쉽게 알 수가 있으며, 實際建築設計業務에 臨하고 있는 技術面에서 봐도 建築設計는 建築物에 關련된 構造施工外에 通信電氣機械 給排水施設 室內裝置 造景 및 環境造成등 複合的인 기술의 종합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리하고서도 그 하나하나가 일정한 기준이나 규격 그리고 일정 장소에 얹매이지 않고 수요자의 경제능력 생활활동면 등에 알맞도록 해야 하는 特殊創作技術分野라고 認定해야 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건축설계는 그 國家가 지향하고 있는 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국가백년대계에 입각해서 도시 환경, 생활 환경의 조성요소로서 適否의 여부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도 직결되고 있음으로 설계 창작자의 불가침의 영역인 창작설계는 그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그 權限이 그만큼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論理가 바로 선진국가에서도 定評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제도와 運營面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 國내에서도 지금까지 이와같은 定評에 依해 제도 운영면에서 施行되어 왔던 것이다.

둘째. 建築設計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건축물 자체가 對物의인 것이며 건축설계가 건축물을 施工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 그리고 기술을 提供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건축설계에 있어서는 構造學이나 力學을 무시할 수 없음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科學 技術分野에 속한다고 주장하여온 바 있었던 것이다.

勿論 建築設計에 있어서 과학적 기술도 무시할수는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建築設計가 科學的 根據에 立脚해야 한다는 点을 否認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첫째번에서 論한 바와 같이 건축물이 구조학상 또는 力學的 법주를 벗어날수는 없다고 하나 이것은 建築設計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부분에 속할 수는 있으나 전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論理는 定評으로 채택 되기에는 그 論理의 根據가 회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定評으로 結論짓기에는 어디엔가 不足感이 不無하다.

셋째로는 건축설계는 對人的 藝術創作技術과 과학기술의 복합체라고 論하는 측도 있었다.

이 論理는 無事安逸한 論理같은 印象을 주고 있는 것이다.

分明히 말해서 이 論理는 두 分野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어서 皮相의으로는 妥當性이 있는 것 같아 생각되기도 하나 學說이나 또는 論理의 定義는 하나이여야지 둘이 될수가 없으며 複合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特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論理를 주장하고 있는 측도 건축설계를 어느 분야에 完全무결하게 隸屬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自然 스럽고도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폭넓게 연구개발되어야 한다는 主張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오래 前에 定評이 내려졌고, 또 당시의 論理가 上述한 바와 같이 舉論된 바 있었던 것이 事實이라고 하나 이미 어떠한 動機나 契機가 유발되지 않는 가운데서 自然스럽게 特殊分野에 屬하는 技術로 結論지어 졌던 것이 昨今

國家技術資格法의 發効를 契機로 해서 그 論理가 再然되었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그 歸趨가 原理에 입각하는 方向으로 決定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이다.

특히 여기서 분명히 하지 않아서는 안될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現行 法令과 制度上에 建築法과 建築士法이 立法化되어 施行中에 있으며 이에 따라 施行令도 施行中에 있는데 이法令中에는 建築設計에 대한 많은 規制條項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이 條項中에는 建築設計의 原則과 기술 문제가 포함되고 있음으로 이 法令을 中心으로 해서 볼 때 建築設計가 마치 對物的 技術인 과학기술 분야에 속하고 있는 듯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많은 條項이 對物的인 分野를 規制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創作藝術技術分野는 規制할 수가 있고, 다만一部 이긴 하나 對物的인 技術만이라도 規制를 해서 萬全을 期하도록 하려는데 그 立法趣旨와 精神이 있는 것이지 決코 創作藝術을 度外視했거나 또는 不可侵의 領域에 属하는 分野까지도 規制하는데 目的 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事實이다.

이와 같은 点을 分明히 해주고 있는 点은 첫째 번 論理와 셋째 번 論理에서明白한 것이며, 建築政策을 國家綜合開發計劃의 一環策속에 끼어서 均衡있는 國土의 開發을 期하려는데 主眼을 두고 있음을 暈 決코, 創作技術의 領域을 侵犯하려는 底意는 없다는 事實이다.

## ◇國家技術資格法에서 본 建築設計

建築設計가 特殊技術分野에 属한다는 定評이 내려 진지가 오래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昨今에 이르러 이 問題가 再燃되게 된 直接의 動機는 國家技術資格法 第2條에 規定하고 있는 「技術資格의 定義」. 이 法에서 技術資格이라 함은 機械, 金屬, 化工, 電氣, 電子, 通信, 造船, 航空, 土木, 建築, 織維, 鉱業 및 其他產業의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技術分野資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部門中에 建築이 包含되고 있는데 이 母法을 制定할當時 關係部處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建築은 建築施工, 建築構造 등을 規定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事實이며 또한 이 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技術資格이 對物的, 科學技術에 属하

고 있는 分野만을 包含시키고 있으므로서 對人的 技術이나 創作技術은 除外하고 있다는 立法精神으로 미루어 봐서도 모두가 建築設計나 計劃을 말한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7月1日부터 이 法을 施行하기 위해서 科學技術處가 마련한 同法施行令(案)에서는 각 技術分野의 名稱을 統一하는데 있어서 現在의 1級 建築士는 이 施行令(案)에서 技術士로 改稱하였고 現在의 2級 建築士는 技師 1級으로 하는 한편 建築技術士는 建築設計 및 計劃을 그리고 技師 1級은 建築만을 職務活動範圍로 定한 데서 부터 問題는 蒙起된 것이다.

여기서 同施行令(案)이 그대로 施行된다면은 建築設計는 創作藝術이기 前에 制度上 科學技術分野에 属하도록 하는 結果가 될 것이며, 万一 그것이 아니고 建築設計가 創作藝術分野이며 複合技術이라고 한다면은 同施行令(案)에는 立法精神이나 立法趣旨로 봐서 建築設計는 包含시킬 性質의 것이 아니라는 点을 分明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서 建築設計를 同施行令에 包含시킬 것인가 아닌가 하는 問題는 바로 源泉의 問題로 되고 있는 建築設計가 對物의 순수 科學技術로 断定하는 것이나 아니면 創作藝術 및 複合技術로 간주하느냐 하는 決定에 따라 同施行令의 包含與否가 決定될 問題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에 對해 지금까지 現行法에 依해 建築行政을 擔當해 온 主務部處에서는 建築設計는 同施行令에 包含시킬 수 없는 性質의 것으로 断定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한편 同法施行令(案)에서는 技術分野의 区分에서만 問題가 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많은 專門家들은 同法施行令(案)에서 資格基準을 定함에 있어 技術士의 경우 大學卒業者 또는 同等의 資格者로서 實務經年 7年以上의 者라야 応試資格을 賦與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條項에 對해서도 그대로 看過할 수는 없는 問題라고 보고 있다.

기술의 基準이란 測定하기 困難한 問題中에 하나로서 技術에 限해서만은 각 分野別 習得의 年限이 다르기 마련이며, 또한 技術을 習得하는 사람의 才質과 熟意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함으로 實務經年的 年限基準은 그 技術分野에 属하는 技術者가 就業하는데 있어서 支障이 없을最少의 年限을 定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여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現行制度를 中心으로 해서 建設分野에서만 例를 들어 본다고 해도 土木甲類의 実務經厓年限은 8年으로 定하고 있는 反面에 1級建築士의 実務經厓은 5年으로 定하고 있는 것이다.

万一, 科學技術處가 試案한 施行令(案)과 같은 各種 技術分野의 実務經厓年限을 7年으로 劃一化하는 것이妥當하다고 認定한다면은 여기에는 重大的한 問題가 또하나 惹起될 것이다.

그理由는 7年이妥當한 것을 土木甲類의 경우 왜 8年으로 規定해서 必要以上의 時間을 要하게 함으로 技術者輩出이 무엇보다 時急한 時點에서 蹤跌를 招來케 하였는가 하는 点과 1級建築士의 実務經厓 5年은 7年보다 2年이나 不足되는 年限을 規定하고 施行하여 欲음으로 이는 技術者로서의 資格이 未達되는 것을 政府가 國家考試로서 規定 施行한 結果에 對한 責任은 政府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技術者自身에 있는 것인가 하는 問題에 對한 責任의 所在 問題가 舉論될 수 있으며, 또 지금까지 実務經厓 8年制度에 依해 資格을 얻은 技術者와 7年制度에 依해 資格을 얻은 者와 그리고 5年制度에 依한 者와의 사이에는 同一分野의 同等 技術者로서도 技術上의 優劣이 생길 수도 있다는 重大한 問題点도 内含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뿐 만이 아니라 同施行令(案) 附則에는 実務經厓 7年에 未達하는 年限으로 國家考試에 응試해서, 合格 資格을 얻은 1級建築士를 비롯한 몇 種의 技術者에 對해서는 再檢定을 받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重大한 問題点이 惹起될

憂慮가 큰 것이다.

國家考試한 政府가 法에 依해 考試를 보고, 資格을 認定한 것임으로当事者의 不當한 行為가 없는限 그 既得權은 새로운 法을 마련해서 削奪할수는 없는 性質의 것이다.

더우기 建築士와 같은 技術資格은 이것이 單純한 技術資格만을 政府가 認定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技術資格과 同時에 業免許까지도 併課되고 있다는 事實을勘案할 때, 그리고 모든 考試는 一事不再理原則에 立脚해서 再檢定이던 또는 어떠한 形態로 되든지 간에 다시 試驗制度에 属하는 일을 치르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것이 慣例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資格의 認定은 심지어 日帝下에서 얻은 資格까지도 現在 認定하고 있는 実情인 것이다.前述한 바와 같이 昨今에 이르러 急其也是 建築設計가 어느 技術分野에 属하느냐 하는 問題가 定評이 내려지다 시피한지가 오래前인데도 再燃되고 있다는 事實은 떼아닌 平地風波로서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結論的으로 말해서 技術資格에 있어서는 創作芸術等對人的 技術分野에 對해서는 免許를 줄 수는 없는 것으로서 建築設計의 경우 建築法, 建築士法 등에 依한 規定은 어디까지나 業務法에 属할 뿐이라는 事實을 分明히 한다면 이 論難은 쉽게 解消될 수 있는 問題라고 생각된다.

(筆者：韓國建設問題研究所長兼 建設評論 社長)